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 교육청 업무협약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부 국고보조금(민간경상보조)과 교육청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부가 2022년 2월 공모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이하 '대한상의'라 한다)를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2022년 3월 25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고보조금에 대응하여 지방비를 투자함으로써 해당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사업명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3. ~ 2025. 2. ※ 단, 매년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 가능
사업비	지방비 금 209,350,000원('22. 기준, 국고 50% 매칭)

**제2조(역할 및 임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의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상호 역할 및 임무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를 지원하며, 사업의 범위 안에서 대한상의를 관리·감독한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한상의에 본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한상의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의 장이 본 협약의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

한 규정, 보조금 교부 조건 또는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대한상의 또는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4. 대한상의는 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한다. 단, 매년 국회의 정부예산 및 시·도의 지방비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① 대한상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사업의 세부내용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한상의에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규정하며, 필요한 경우 대한상의는 업무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한상의는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교육부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전담 조직 및 인력)** 대한상의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고보조금에 대응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그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시·도의 지방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한상의의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금을 지급한다. 단, 시·도교육청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관리 및 집행)** ① 대한상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응 투자한 지방비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한상의는 사업의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한상의는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승인을 얻은 후 운용할 수 있다.

④ 본 사업의 간접비 산출,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상의의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를 대표로 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수탁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다.

⑥ 지방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이월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① 대한상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주요 실적 및 산출물
2. 사업비 집행 내역

② 대한상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물의 소유 및 데이터 관리)** 본 사업의 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데이터 등 모든 결과물은 국가 및 시·도의 소유로 하며, 대한상의는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점에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한다.

3. 데이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10조(지정 취소)**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한상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직업계고 채용연계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예산을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국가재정 및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예산을 받은 경우
6. 매년 추진되는 교육부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함이 인정되는 경우
7.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② 보조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대한상의는 이미 교부된 지방비 집행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 기간)**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양 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지되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 종료
2. 제10조에 따른 시행기관 지정 취소
3. 양 기관의 별도 협의

**제1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의는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의를 가지고 아래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의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

여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3. 대한상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4. 대한상의는 본 사업과 관련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회, 시·도 의회 및 언론 대응에 있어 적극 지원한다.
5. 대한상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 열람, 관계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금지)** 대한상의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4조(기타)** ① 대한상의는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계 법규에 관한 내용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 대한상의는 본 사업의 실적에 대한 홍보 등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의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해석에 의한다.

⑤ 본 협약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대한상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22년 // 월 / 일



대한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정선



회장

최태원

